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3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문진석 · 전진숙 · 이인영
한민수 · 허종식 · 손명수
강준현 · 박용갑 · 송기현
이연희 · 김병기 · 전용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지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4억 3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

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